

3.22 공포, 9.23 시행

2016년 개정, 정보통신망법 변화 ③

원문보기

① 망법고시위반 → 유출시 처벌강화	② <점검→파기> 강화		
<p>징벌적 손해배상 (시행일 2016.7.25) 32조②항</p> <p>이전 Report 보기</p>	<p>법 위반 사실 인지시 CPO→CEO 보고 27조</p>	<p>법 위반시 방통위가 CEO, 임원 징계 69조의2</p>	<p>위반행위 관련 취득한 금품, 그 밖의 이익은 몰수 or 가액 추징 75조의2</p>
<p>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파기 차단 (시행일 2016.7.25) 32조의3</p> <p>이전 Report 보기</p>			

③ 그 외 변화들

<p>스마트폰앱 내 개인정보 접근통제 (시행일 2017.3.22) 22조의 2</p>	<p>개인정보처리의 범위확대 24조의2</p>	<p>취급위탁 규정 강화 25조</p>	<p>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 거래금지 44조의7</p>
<p>(피싱or 파밍 등)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수집발생시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있는 시스템 구축 (2016. 9.22 이내 완료) 49조의 2, 부칙3조</p>		<p>(동의받아야 하는) 개인정보 해외이전 개념구체화 →제공(조회 포함), 처리위탁, 보관 63조 ②항</p>	
<p>정보통신망 해킹미수범도 처벌 →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이하 벌금 71조</p>	<p>악성프로그램 유포자 처벌강화 →7년이하 징역 or 7천만원이하 벌금 70조의2</p>	<p>용어변경 및 통일 →취급을 처리로 용어변경</p>	

〈상세규정 보기〉

조항	개정여부	내용									
22조의2	신설	<p>① <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기능 및 저장된 정보>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한다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권한종류</th> <td>1. <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></td> <td>2. <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>인 경우</td> </tr> <tr> <th>동의항목</th> <td>가.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.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</td> <td>가.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.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.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</td> </tr> </table>	권한종류	1. <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>	2. <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>인 경우	동의항목	가.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.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	가.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.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.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			
		권한종류	1. <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>	2. <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>인 경우							
		동의항목	가.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.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	가.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.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.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							
<p>② <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>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,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③</th> <th>아래 업체 대상으로</th> <th>다음 경우에</th> <th><이용자 정보보호조치> 의무화</th> <th>위반시 처벌</th> </tr> <tr> <td></td> <td>이동통신 단말 장치의</td> <td>1. 제조업자, 2. SW제작공급자 3. OS 공급자</td> <td><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>가 <이동통신단말장치>기능 및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경우</td> <td>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<이용자정보 보호조치>를 해야 한다 (대통령령에서 구체화)</td> <td>과태료 3천만원</td> </tr> </table>	③	아래 업체 대상으로	다음 경우에	<이용자 정보보호조치> 의무화	위반시 처벌		이동통신 단말 장치의	1. 제조업자, 2. SW제작공급자 3. OS 공급자	<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>가 <이동통신단말장치>기능 및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경우	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<이용자정보 보호조치>를 해야 한다 (대통령령에서 구체화)	과태료 3천만원
③	아래 업체 대상으로	다음 경우에	<이용자 정보보호조치> 의무화	위반시 처벌							
	이동통신 단말 장치의	1. 제조업자, 2. SW제작공급자 3. OS 공급자	<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>가 <이동통신단말장치>기능 및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경우	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<이용자정보 보호조치>를 해야 한다 (대통령령에서 구체화)	과태료 3천만원						
<p>· 용어변경(취급→처리) · 처리의 개념확대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 colspan="2">기존 취급의 개념 → 현재 처리의 개념</th> </tr> <tr> <td>수집, 보관, 처리, 이용, 제공, 관리, 파기 등</td> <td>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</td> </tr> </table>	기존 취급의 개념 → 현재 처리의 개념		수집, 보관, 처리, 이용, 제공, 관리, 파기 등	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							
기존 취급의 개념 → 현재 처리의 개념											
수집, 보관, 처리, 이용, 제공, 관리, 파기 등	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										
24조의2	개정										
25조	기존	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에게 1. 처리위탁을 받는 자 2. 처리위탁업무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									
	개정	④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·감독 및 교육하여야 한다.									
	신설	⑥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.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									
	신설	⑦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에는 <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>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<신설> 위반시 과태료 2천만원 이하									
44조의7	신설	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어서는 안되는 불법정보 6의2호. 이 법 or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,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									
49조의2	기존	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									
	개정	② <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>는 ①의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미래부 or 방통위 or KISA에 신고하여야 한다.									
	신설	<p>③ 미래부 or 방통위 or KISA는 ②의 신고를 받거나 ①의 위반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1</td> <td>기존</td> <td>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전파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기존</td> <td>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·경보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개정</td> <td><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>에게 접속경로의 차단 or 이용자에게 ①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 등 피해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</td> </tr> </table>	1	기존	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전파	2	기존	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·경보	3	개정	<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>에게 접속경로의 차단 or 이용자에게 ①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 등 피해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
		1	기존	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전파							
2	기존	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·경보									
3	개정	<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>에게 접속경로의 차단 or 이용자에게 ①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 등 피해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									
<p><신설 부칙3조> (위반행위에 노출된 사실 안내에 관한 경과조치) <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>는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											
	신설	④ 미래부 or 방통위는 ③항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<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>에게 <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>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									
63조②항	신설	<table border="1"> <tr> <th><이용자동의>를 받아야하는 국외이전</th> <th>국외 이전시 <이용자동의>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</th> <th>처벌</th> </tr> <tr> <td>국외에 제공(조회 포함)</td> <td>생략할 수 없음</td> <td>과태료 2천만원 이하</td> </tr> <tr> <td>국외에 처리위탁, 보관</td> <td>계약이행과 이용자편의증진에 필요한 경우로서 ③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27조의2 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<이용자동의>를 받아야하는 국외이전	국외 이전시 <이용자동의>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	처벌	국외에 제공(조회 포함)	생략할 수 없음	과태료 2천만원 이하	국외에 처리위탁, 보관	계약이행과 이용자편의증진에 필요한 경우로서 ③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27조의2 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	
		<이용자동의>를 받아야하는 국외이전	국외 이전시 <이용자동의>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	처벌							
국외에 제공(조회 포함)	생략할 수 없음	과태료 2천만원 이하									
국외에 처리위탁, 보관	계약이행과 이용자편의증진에 필요한 경우로서 ③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27조의2 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										
<p>63조 ③항(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.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.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,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.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(법인 경우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) 4.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·이용 기간</p> <p>27조의2(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</p>											
70조의2	신설	악성프로그램을 전달 or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or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								
71조	신설	① 9.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-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보통신망 침입미수범도 처벌									